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3. 11 _____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6. 3. 12

다. 상 정 일 자 : 제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96. 3.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병일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사항과 자치구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보강 그리고
방법원 사직에 따른 정원을 일부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구본청 직원 : (현) 435명 ⇒ (조정) 436 > 증 1명

증 원 : 3명 (지역경제과 양특요원 9급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 1명, 사무위임에
따른 지방환경 7급 1명, 위생감시요원 별정 8급 1명)

감 원 : 2명 (방원원사직 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조정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공무원을 지방직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최근 환경관리 업무의 확산, 증가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한다면 시로부터 일부
사무의 수임과 함께 이에 따른 인력의 보강과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의 정착을 위해 접객
업소의 불법, 퇴폐영업 행위를 근절코자 최소한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정원을
증원한 것, 그리고 방법원은 퇴직시 인력을 보충하지 않음에 따라 정원을 감축조정하는 것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